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2. 3. 17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2년 3월 8일
- 회부일자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,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의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범위 변경
 - 가) 제1관서 중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(안 제2조~제4조)
-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
 - 가)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항에 따라 “감정평가업자” 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 으로 용어 정비(안 제32조, 제65조)

나)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사항 반영(안 제34조)

-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어·귀촌 지원 시설 추가
- 재난 피해 시 한시 적용 감액 규정 신설
 - 교육용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: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800
 -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: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

다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정비(안 제34조, 제36조, 제37조)

-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
-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
-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

라)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 고시) 제16조에 따라 수의매각 기준 정비(안 제41조)

○ 관사의 정의 및 보유에 관한 사항

가) 관사 사용자 범위 확대(공무원⇒교직원) (안 제49조, 제50조, 제52조, 제53조, 제56조)

나)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관사 보유 근거 마련(안 제49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, 용어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외에 주요 개정사항은 고등학교, 특수학교 공유재산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및 신속한 사무 처리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며, 관사 보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를 공무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같은 시기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12월 일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음.
- 이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되었음.
- 본 조례의 개정과 상위법 시행(2021.6.23.) 시기와의 불일치로 2021년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과 전년도 기준에 대한 감액 조정 적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 사업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.
- 본 조례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